

환 경 보 호

(Environment Protection)

1. 대기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대기일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적법하게 인허가를 받았는가?	①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검토하는가? -특정 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거나 특별 대책지역이 아닌 곳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해야 함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거나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50% 이상(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30% 이상) 증설하거나 기존 시설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대기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하는가?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 사업장 도면(위치지도)를 작성하여 유지관리를 하는가?	①배출 시설 번호(tag number) 및 위치 ②배출 오염물질 목록 및 시설별 처리 Capa 등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높이, 걱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을(배출원, 배출량) 주기적으로 측정하는가? (자가측정 포함)	①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가? * 담당자(환경기술인) 입회 측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기오염물질 관리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가?	①법규 기준 준수 여부 ②사업장 자체 기준(법규 기준 이하로 설정·관리 하고 있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대기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①자체 운영기준 확인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설치를 면제 받으려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사용되는 원료와 연료의 내역서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검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하고, 최소 1년간 보존해야 함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저감) 위한 목표를 주기적으로 설정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①연료, 열생산 기기, 열 전송·저장 설비, 열을 사용하는 장비,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 폐열의 회수를 위한 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2002년 2월 4일에 고시된 에너지관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해야 함. ②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이행 계획을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협약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대기오염물질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①책임자 지정, 세부 이행 계획 수립, 목표달성 기한(연간), 경영자(공장장) 검토 등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②한국에너지공단과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감축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제출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에 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온실가스배출감축 실적을 등록(KVER 사업)해야 함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였는가?	①필터(먼지, 활성탄), 소각시설, 응축시설(냉각기), 가스조절장치(탱크)		
	각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각각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매뉴얼이 있는가?	①자체점검, 자체검사업체(외주)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는가?	①필터 누수 감지, 불꽃 감지(소각시설), 필터 차압관리, 활성탄 교체 등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한 담당자를(환경기술인) 임명하였는가?	①담당자의 자격 및 임명기간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시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해성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에너지 개발, 항만의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공항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기간 사업 및 삼림과 토지 정리 작업, 산림의 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함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기준이 있는가?			

2. 폐수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①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 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즉, 팔당호와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상수원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하는 변경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허가가 필요한 시설 이외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수처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거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나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나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함		
	관련 법규사항 변경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가?	①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또는 50%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30% 이상) 증가하거나, 수질오염물질을 폐수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기 위해 수질오염 방지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사업자는 환경부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사업자 내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정별 오염물질 배출량 및 폐수/상하수도 흐름도를 관리하고 있는가?	①도면 상 배출시설 위치, 배출량, 폐수 흐름도 표기, 오염물질목록 등		
	사업장 방류수(배출 폐수)에 대한 주기적인 농도 측정을 하고 있는가?	①자가 측정 여부 및 주기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폐수 배출보고서와 관계 데이터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관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①법적 대상물질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가? *수질오염물질 55종, 특정수질오염물질 30종		
	사업장 방류수(배출 폐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가?	①법규 기준 ②사업장 자체 기준 (법규 기준 이하로 설정·관리하고 있는가?) ③설치를 위해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폐수배출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①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기재를 한 날로부터 적어도 1년간 보존하여야 함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주기적으로 설정하고 검토하고 있는가?			
	수질오염물질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①책임자 지정 ②세부 이행 계획 수립 ③목표달성 기한 ④경영자(공장장) 검토 등		
	사업장 폐수가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①자체폐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처리 등		
	폐수 유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가?	①자체 처리시설의 폐수, 제3자에 의해 처리된 폐수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위탁처리) ②공정 폐수, 세척 배출수 ③우수, 냉각수, 응축수		
	자체 폐수처리시설은 제품생산시설의 폐수 배출 용량에 맞게 설계되어 있는가?	①허가량(1~5종)을 초과하지 않고 배출하고 있는가? ②장마철 강수량을 고려하여 설계되어 있는가?		
	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 기준이 있으며, 관련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가?	①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운영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가? ②사업장 방류(폐수종말처리시설)에 앞서 공정에서 전처리를 하고 있는가? ③자체 폐수처리시설의 유입수와 유출수를 지속적으로 관찰, 관리하는가? *사업장과 폐수종말처리시설과의 계약사항(오염물질 및 농도 등)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수질자동측정기기 등 측정기기의 주기적인 검교정을 하고 있는가?	①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함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는가?			
	냉각수 시스템(쿨링타워)은 유해물질과 접촉가능성이 있는가?			
	냉각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처리가 불필요한 폐수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가?			
	미처리된 폐수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하는가?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 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위험성평가에 따른 추가 보완 및 개선을 하는가?	①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그 시설들을 정상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3. 소음 및 토양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소음>			
	작업장 소음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가?	①소음 및 진동 배출설비(예: 금속절단기, 공기 압축기, 송풍기, 파쇄기, 연삭기, 건축재 제조 기계, 목재 및 펄프 가공기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가 발급한 시설 설치 신고필증을 소지해야 함 ②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주거지역, 공동주택지역 부근에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적절한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함		
	소음이 높은 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하는가?	①공장 안에 소음 및 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음 및 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소음 및 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함 ②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소음이 높은 지역에 청력 보호장구를 비치하고 있는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음 진동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된 공장소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음진동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환경으로 소음 및 진동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된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함. ②85dB 이상에서 청력 손상		
	정기적 혹은 상시적으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는가?	①소음·진동 배출시설이나 소음·진동 방지시설(총 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런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작업장의 소음(dB)의 정도에 따른 노출한계시간을 설정하였는가?			
	근로자들은 해당 작업장의 소음 노출 한계 시간을 알고 이에 맞는 적당한 휴식을 취하는가?	①허용 이내 소음일지라도 장기노출 시 청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소음 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가?			
	<토양>			
	토양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설치 허가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①허가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가? ②토양오염검사의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토양오염의 정도가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범위를 파악하며, 오염된 토양의 정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관련 법규사항 변경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가?	①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일반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 분기마다, 특정유해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주기적인 지하수오염검사를 해야 함		
	사업장에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가?	①지하수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는 지하수오염검사를 실시하고, 오염물질을 제거하며,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토양오염시설 및 물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법규 기준 및 자체 기준 충족여부)	①물질별 토양오염에 대한 기준 ②방류벽 재질 등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부지와 그 주변지역에 대한 검사를 받고(하고) 있는가?	①지하수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검사하고 있는가? ②지하수 채취 시, 측정공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가? ③토양오염관리대상 시설 부지에서 시료 채취 시, 채취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④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지하수수질검사전문기관과 계약하여 일반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적어도 매 분기마다, 특정유해오염물질에 대해서는 매 6개월마다 주기적인 지하수오염검사를 해야 함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사업장 및 주변지역의 토양이 오염되었을 경우, 오염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가?	① 자체기준 유무에 대해서도 확인함		
	사업장에서는 토양오염의 방지 및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① 지하수 정화를 실시하려는 사업자는 규정된 오염지하수정화기준을 준수하고 시장, 군수로 부터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함		
	토양오염 방지 및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을 마련하였는가?	① 책임자 지정 ② 세부 이행 계획 수립 ③ 목표달성 기한 ④ 경영자(공장장) 검토 등		
	토양의 위해성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함 ② 사내 지하배관에 한정		
	위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기준이 있는가?			

4. 폐기물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폐기물 배출자 신고(인허가)가 되어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가?	①지정폐기물을 수집, 운송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함. ②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장에서 1일 100kg 이상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거나, 1일 300kg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관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폐기물 배출일 또는 시설 운영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③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 군, 구청장에게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 신고해야 함 ④폐기물 처리시설의 상호나 대표자 이름, 수집·운반·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 및 영업구역 등의 변경; 운반차량이나 처리용량의 30% 이상 확대;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매립시설의 증·개축; 폐기물 보관량의 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받아야 함. ⑤폐기물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폐기물 처리허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시·도지사의 설치 승인을 얻어야 함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전 평가를 하고 있는가?	<폐기물 운송 및 처리> ①연면적 1,000㎡ 이상의 공장, 토지, 건물에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1일 300kg 이상(공사나 작업 중에는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분리 및 보관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다른 재활용시설에 공급해야 함. ②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위탁하려는 사업자는 수탁자가 그 사업을 수행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함. ③폐기물처리 허가를 받고서 폐기물 처리시설 (예: 폐기물 소각시설, 파쇄·절단시설, 탈수시설, 건조시설, 폐기물 고형화시설, 매립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의 설치기준을 준수해야 함		
	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후,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가?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허가를 받고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함 ②연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물 안에 공간을 점유하고 있거나, 1일 300kg 이상(또는 공사나 작업 중에는 5톤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건물관리인이 설치한 폐기물 보관소에 폐기물을 분리·보관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이 아닌 것과 재활용 가능자원을 혼합하지 않아야 함 ③섬유제품, 석유정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 1차 금속, 전기기계, 의료기기, 자동차, 운송 장비, 전기 및 가스를 제조 또는 생산하며, 연간 200톤 이상의 지정폐기물이나 1,000톤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발생억제 자체계획을 세우고, 이것의 이행 결과를 평가 및 기록해야 함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폐기물 관련 법규(제정 및 개정)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를 하는가?			
	폐기물 발생장소, 보관장소 및 처리장소(자체소각장)에 관한 도면이 있는가?	- 사업장 발생 폐기물 종류(일반, 지정), 보관 장소 등 ①규정된 배출량 한도(예: 월 500kg 이상의 침전물,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폐기물, 월 50kg 이상의 폐유기용제나 폐유, 감염성폐기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이 들어있는 폐기물) 이상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환경부가 발급하는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서를 소지해야 함. ②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③폐유기용제는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함. ④폐산, 폐알칼리, 유기용제, 폐농약 또는 폐흡착제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이런 폐기물을 45일 이상 보관해서는 안됨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폐기물 수집, 운반 매뉴얼이 있는가? - (수집) 폐기물 종류 및 성질·상태별 재활용 가능 여부, 가연성 및 불연성 여부 - (운반) 폐기물이 흘날리거나 누출 방지	①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허가증을 소지해야 함 ②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에 따라 환경부가 발급한 허가증을 소지해야 함 ③월 1톤 이상의 폐수침전물이나 500kg 이상의 분진, 광재,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를 배출하며, 사업장폐기물을 운반이나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인계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 제공해야 함 ④폐기물이 배출되는 시, 군, 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 군, 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운반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인계서를 발행하여야 함. ⑤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는 적어도 3년 동안 보존해야 함 ⑥폐유를 함유하고 있는 액체 폐기물을 수집,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운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탱크, 용기 또는 파이프를 사용해야 함 ⑦규정된 배출 한도(예: 월 100kg 이하의 폐유 기용제나 폐유, 월 200kg 이하의 폐산, 폐알칼리, 석면 함유 폐기물, 월 1톤 이하의 침전물) 이하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이나 처리를 수탁한 처리업자에게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해야 함 ⑧지정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하는 차량은 황색으로 도색하는가?		
	사업장 폐기물 저장(보관) 장소가 있는가?			
	사업장 폐기물 저장소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①적절한 라벨링(표식) ②바닥 침투 방지 ③소화 설비 ④유출물 차단 장치 ⑤입출고 날짜 및 보관 기한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폐기물의 구성성분 및 유해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 분류를 하는가?	①폐기물 재활용 시 아래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가?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생활환경에 위해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 ②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재활용대장을 관리, 유지하고, 적어도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가? ③폐기물 최종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최종처리대장을 관리, 유지하고 적어도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목록이 있는가?	①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관리, 유지하고 적어도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가?		

구분	항 목	참고사항	검토내용	비 고
		②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과 폐기물중간처리대장을 관리, 유지하고 적어도 3년간 기록을 보관하는가?		
	혼합 폐기물의 분리가 어려울 경우, 적절한 처리 기준이 있는가?			
	재활용 불가한 폐기물은 소각으로 우선 처리하는가?	①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소각→매립		
	폐기물 발생 및 감량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매년)	①책임자 지정, 세부 이행계획, 목표달성 기한, 경영자(공장장) 검토 등이 정해져 있는가?		
	폐기물 처리서류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①폐기물 조성(유해물질함량),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 저장수명(기간), 폐기물 포장재 적합성,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관리하는가?		
	폐기물 유해성평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①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판매, 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과 폐기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유해성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절차 기준이 있는가?			